

〈자료〉

법제사 강좌 현황

유성국*

I. 머리말

2001년 6월 14일 한국법사학회 간사회의(장소 :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각 대학의 법과대학(또는 법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法史學 관련 강좌 현황”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6월 16일 “한국법사학회 제59회 정례학술발표회(장소 : 서울대학교)”에서 崔鍾庫 회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앞서 4월 28일 한국법사학회 총회(장소 : 서울대학교)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종고 교수는, 6월 1일에 朴秉濠·徐敏 전임 회장과, 玄勝鍾 고문, 그리고 감사와 이사들을 초빙한 간담회(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각종 현황과 악과 자료출판 등 학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2003년에 맞게 되는 학회창립 30주년을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가 바로 “法史學 관련 강좌 현황” 조사며,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법사학회는 우리나라 법과대학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하는데 비해서 법사학 강좌는 활성화되기커녕 오히려 점차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많은 우려를 해왔다. 법학도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法學教育은 司法試驗 과목을 위주로 한 과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법학교육을 정상화하

* 배재대학교 법학부 강사, 법학박사

기 위한 연구와 논의도 그동안 많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와 더불어 오히려 파행을 더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광복 이후 50년대까지만 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아탑의 이상이 살아 있던 시절에는 법학교수들도 법철학을 비롯하여 법제사, 법사회학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강의했다. 그러던 것이 60년대 들어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학문의 일반적인 성향은 실용화·현실화로 치닫고, 법학교육은 그 선두에 있었다. 즉 법학은 사회적인 출세에 유용한 학문이라는 인식에서 학생들이 몰려들며 따라 법학도는 양적으로 꾸준히 팽창하였으나, 이와 달리 법학교육은 점차 사법시험과목 위주로 현실화함에 따라 학문 자체로서는 폭이 거의 넓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973년 2월 10일, 지주적인 법학을 수립하기 위해 뜻 있는 법학도들이 모여 법사학회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법사학이 발전하기에는 너무나 여건이 좋지 않았다. 대학에서 법사학 전임교수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사학자가 나올 수 없고, 법사학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사학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 즉 악순환이다. 게다가 근년에는 많은 대학에서 학부제와 복수전공제 운영으로 전공이수학점 요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교수들이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법사학 강좌를 개설하더라도 수강학생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폐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기초법을 수강하려는 학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혹 학교에서 기초법 강의를 강화하기 위해 법사학이나 법철학·법사회학·영미법 등을 한 학기에 2 강좌 이상 개설할라치면 그 얼마 되지 않는 학생마저도 다시 분산돼서 이도저도 기준 수강생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모두 폐강될 우려가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법사학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강생 확보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로 법사학회는 그동안 법사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초법학을 바탕으로 실정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요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 법철학처럼 법사학을 최소한 사법시험 1차 과목에 넣는 것이다. 사법시험에서 비롯된 파행 교육 때문에 설자리를 잃고 있는 법사학이 사법시험에 기대어 생존을 강구하는 것

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하지만 학생들을 법사학 강의에 끌어들이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선결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법시험 과목에 법사학을 포함시키려면 적어도 법과대학의 반 이상이 현재 법사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강의도 거의 하지 않는 과목을 사법시험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수강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시험에 과목을 넣으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수강생이 있어야 한다는 역설이다. 다른 하나는 사법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될만한 교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서양법제사 쪽에는 그래도 몇 종의 교재가 있으나 한국법제사 쪽에는 이렇다 할만한 교재가 없는 형편이다.

한편 그동안 법학교수들의 인식변화로 기초법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법사학 강좌를 개설한 학교도 많지만 근년의 변화로 다시 아예 폐지한 학교도 종종 있다. 그래서 위기감이 고조되지만 현재까지 그 정확한 실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또한 법사학 강좌 현황에 대한 조사가 절실하다. 아무래도 막연한 위기감보다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법사학 강좌 현황에 대한 조사는 한국법사학회 총무이사 鄭肯植 교수의 권유와 회장 최종고 교수의 부탁으로 내가 맡게 됐다. 법사학 강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란 기본지침 외에는 모든 것을 나한테 일임했다.

II. 조사 방법

조사는 설문지를 작성해서 이를 전자우편으로 각 대학교의 특정 교수한테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다시 전자우편으로 받아서 통계를 내고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 작성

이 조사는 법사학 강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문은 각 대학에서 현재 법사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먼저 설문을 크게 ①법사학 강좌를 개설한 경우와 ②개설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참고로 법사학 외의 ③다른 기초법 강좌 개설 현황을 묻는 질문을 덧붙였다.

처음에는 설문을 “근년에 법제사 강좌를 개설한 경우”와 “근년에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로 표현했으나, “근년”이란 표현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올해”로 바꿨다. 즉 “근년”이라 표현하면 최근의 교과개편으로 이미 강좌를 폐지했다더라도 2-3년 전에 개설했던 강좌까지 포함해서 답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요 4-5년 사이 학부제다 복수전공이다 해서 그 변화가 무척이나 심하고 이에 교과개편도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많지는 않겠지만 오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올해”란 표현에도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설문의 기본취지는 현재 교과과정에 법사학 과목이 포함돼 있고 또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가 안식년을 맞아서 올해는 특별히 개설하지 않았거나, 개설했으나 수강생수가 적어서 폐강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라고 표현하면 이런 경우 끝이끝대로 ‘개설하지 않았다’고 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설문지 아래에 “올해”에 대한 주를 달았다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우고 일차적으로 발송했으나, 구차하더라도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설문지를 발송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올해만 예년과 다르게 강좌를 개설했다면 예년에 비추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란 주를 달았다. 그리고 “법사학”이라 표현하지 않고 “법제사”라 표현한 것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법사학”이란 표현에 생소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법제사” 또는 “서양법제사”, “한국법제사”란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이다.

“올해 법제사 강좌를 개설한 경우”는 설문을 다시 ①강좌명, ②학점수, ③개설학년, ④필수·선택 구분, ⑤현재 강의를 담당하는 분의 전공, ⑥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경우 강좌명으로 나눴다. 여기서 ⑥은 본래의 조사취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참고로 넣은 것이고 ②③④⑤는 허일태 교수가 2000년에 실시한 “한국 법철학교육의 현황” 조사 설문을 참조했다.

“올해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 교과과정(커리큘럼)에는 있으나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개설하지 않는지 아니면 아예 교과과정에도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과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법제사 강좌를 개설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설문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설한 다른 기초법 강좌”에 대한 설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철학·법(률)사상사·법사회학을 예시하고, 그 밖의 과목도 답할 수 있도록 ‘기타’란을 크게 마련했다. (뒤에 첨부한 설문지 참조)

2. 조사대상 선정

조사대상은 1차적으로 2000년에 발행한 한국법학교수회수첩에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학부제일 때는 법학전공. 한국항공대학교는 항공우주법학과)가 설치된 대학교를 선정했다. 여기서 본교와 분리된 캠퍼스(분교)에 별도로 법학과가 설치된 대학 4개교(건국대학교·단국대학교·동국대학교·연세대학교)는 본교 법학과와 분교 법학과를 별도로 조사했다. 그리고 법학교수회수첩에는 없으나 개인적으로 알게된 천안대학교를 포함시켰다. 천안대학교는 법학전공이 2001년에 설치되어 아직 법학강좌가 전반적으로 개설되지 않았으나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 당시 상명대학교에서 2002학년도에 신설되는 법학과에 학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나 조사에서 제외했다. 이래서 조사대상은 모두 95개 대학이었다(<표1> 참조).

3. 협조자 선정

이 설문지를 “한국법사학회 회장” 명의로 각 대학의 학장이나 학과장한테 보내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공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적극적인 협조

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조사는 철저하게 내가 주체가 돼서 개인적인 인맥을 주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각 대학에 있는 내 동문 교수들과 법사회회에서 친분이나 안면이 있는 교수들을 협조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해서 60개 대학이 해결됐다. 그 밖의 대학들은 먼저 법철학·법사상사·법사회학 등 기초법을 전공하는 교수 8명, 법사회학회회원명부에서 5명을 협조자로 선정했다. 이런 분들이 없는 대학은 그 지역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한 동문 교수를 통해서 소개받거나(9명), 그도 저도 없는 대학은 부득이 학과장을 선정했다(12명).

(표1) 조사대상 대학교

지 역	대 학 교
서울	건국대학교(서울), 건국대학교(충주),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서울), 단국대학교(천안), 동국대학교(서울), 동국대학교(경주), 명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 연세대학교(원주),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28)
경기 인천	강남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찰대학교, 국립한경대학교, 대진대학교, 수원대학교, 인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11)
강원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관동대학교, 상지대학교, 한림대학교(5)
충북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4)
충남 대전	공주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천안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호서대학교(9)
대구 경북	경북대학교, 경주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위덕대학교, 한동대학교(9)
부산 경남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13)
전북	군산대학교, 서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7)
전남 광주	광주대학교, 대불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8)
제주	제주대학교(1)

4. 조사

설문지 준비와 전자우편주소는 대부분 미리 파악해 놓았으나 실제 조사는 2001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했다. 먼저 1일 새벽에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들과 법사학회회원 교수들한테 전자우편에 첨부해서 설문지를 발송했다. 다음으로 3일 새벽에 소개받은 교수들과 기초법을 전공하는 교수들한테, 그리고 4일 낮에는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들한테 역시 전자우편에 첨부해서 설문지를 발송했다. 설문지에 대한 답은 역시 전자우편에 첨부해서 보내주십사 부탁했다.

설문에 대한 답은 1일 오전부터 오기 시작했으나 전자우편주소가 틀려서 설문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때는 인터넷으로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설문지를 발송했다. 답이 들어오는 대로 부족하거나 모호한 점이 있으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확인·보완했다. 5일부터는 답이 없는 분들한테 확인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평소 전자우편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확인하는 가운데 학과장은 그동안에 바뀐 경우도 있고, 기초법전공 교수 중에는 안식년으로 국내에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몇 분은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으로 설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었다.

설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협조자로 선정해서 부탁드린 분들이 직접 해주셨지만, 10개 대학은 그 학과 조교들을 통해서 조사했다. 이들 대학은 부탁드린 분들이 학과장이거나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가 많고 일부는 원로 교수다. 이 분들한테는 많은 경우 10여 차례나 전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직접 통화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학기말 시험 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접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보낸 95개 학교 가운데 끝내 답을 얻지 못한 학교는 두 곳이다. 한 곳은 학과장이 답을 보내셨으나 설문에 대한 답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것이라 다시 보내주십사 부탁드렸지만 결국 받지 못했고, 다른 한 곳은 학과장과 끝내 통화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교 마저 법학전공이 아니라 내용을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답을 얻은 학교 가운데도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일부 교수는 강의개설 현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는 실제로 개설된 것과 교과과정에만

있는 것을 혼동해서 답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또 전화로 설명을 들은 내용 가운데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한두 군데 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없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일단 그 조사 결과를 12월 14일 한국법사학회 제61회 정례학술발표회에서 보고했다. 뒤에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할까도 생각했으나 이런 것은 모두 합해야 너덧 건 미만이므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Ⅲ. 현황 분석

1. 법제사 강좌를 개설한 대학

설문지를 보내서 답을 얻은 93개 대학 가운데 법제사 관련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은 61개교로 약 66%였다.

학부의 강의는 교과과정이 개편되기 전에는 해마다 같은 강좌가 되풀이 개설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년에 학부제와 복수전공제 운영으로 전공이수 학점이 줄어들어 따라 부득이 유사한 강좌를 격년제로 개설하는 학교도 있다. 그래서 서경대학교는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법제사와 법사상사를 격년제로 개설하지만 포함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는 최근에 로마법전공 교수가 전임으로 부임함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법제사를 개설한다고 해서 포함했다. 강좌 개설 현황을 설문에 따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1) 강좌명

설문에서 기본적으로 예시한 이름은 법제사·한국법제사·서양법제사·로마법·기타였다. 이에 대한 회답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 : 34, 한국법제사 : 14, 서양법제사 : 19, 로마법 : 8, 기타 : 6

한 학교서 법제사 강좌를 1년에 두 가지 이상 개설하는 대학이 13개교 있기 때문에 이들의 누계는 법제사 강좌 개설학교 수인 61을 훨씬 넘는다. 그러나 나머지 48개교는 한 가지 강좌만 개설하며, 이들 대부분은 “법제사”란 이름으로 개설한다. 한 가지 강좌만 개설하는 대학과 그 강좌명은 다음과 같다.

법제사	강원대, 경기대, 경상대, 경성대, 강원대, 광주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대전대, 대전대, 동아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천대, 창원대, 청주대, 충북대, 한양대, 호남대, 홍익대(32)
한국법제사	부경대, 부산대, 인하대(3)
서양법제사	경북대, 경희대, 동신대, 부산외국어대, 원광대, 전주대, 조선대, 충남대(8)
로마법	전북대(1)
기타	법의 역사 : 인제대 · 한남대, 법사학 : 제주대, 비교법사 : 한동대(4)

두 가지 이상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은 다음과 같다.

한국법제사 서양법제사	국립한경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영남대, 전남대, 한국해양대(6)
법제사 · 로마법	대구가톨릭대, 한국외국어대(2)
한국법제사 · 서양법제사 · 로마법	고려대, 동국대, 목포대, 신라대(4)
서울대	한국법제사 · 서양법제사 · 로마법 + 한국근대법사 · 중국법제사(격년 개설)

강좌명이 “법제사”인 경우 실제 강의내용이 서양법제사인지 한국법제사인지 또는 양쪽 다인지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숭실대처럼 한국법제사를 강의하는 대학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서양법제사를 강의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서양법제사는 그런 대로 강의교재로 적합한 교재가 시중에 나와있지만 한국법제사는 그렇지 못

하다는 점과 우리 현행법의 뿌리는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대륙법이란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법제시를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2) 학점 수

한 학교에서 1년에 개설하는 법제사 강좌 학점 수를 묻는 것이다. 1년에 한 강좌만 개설할 경우 3시간 3학점인 경우와 2시간 2학점인 경우, 두 가지 강좌 이상을 개설하거나 같은 강좌를 여러 개 개설하는 경우는 그 시간 수와 학점 수의 합계를 물었다. 모든 학교가 시간 수와 학점 수는 같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3학점	강원대, 경북대, 경원대, 경희대, 군산대, 단국대, 대전대, 동신대, 부산대, 서경대, 세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워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동대, 한양대(26)
2학점	경상대, 경성대, 국민대, 부경대, 홍익대(5)
6학점	경기대, 고려대, 광주대, 대구가톨릭, 대전대, 동국대(경주), 부산외국어대, 상지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송실대, 인천대, 전남대, 전주대, 조선대, 청주대, 한국외국어대, 한남대, 한국해양대, 호남대(21)
8학점	영남대(1)
9학점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신라대, 원광대(5)
12학점	국립한경대, 배재대, 서울대(3)

1년에 12학점을 개설하는 국립한경대와 배재대는 강좌의 종류는 두 가지나 주·야로 개설하며, 서울대는 법제사 강좌가 5 가지지만 1년에 개설되는 것은 4강좌다. 그리고 동아대와 원광대의 법제사 강좌는 비록 한 가지지만 1년에 3 강좌를 개설하며, 영남대는 2학점 짜리 강좌 두 가지를 4 강좌 개설한다. 또 고려대는 2학점 짜리 강좌 세 가지를 각기 1 강좌씩, 반면에 한남대는 2학점 짜리 한 가지를 3 강좌 개설한다.

한데 목포대는 기초법과목 특히 법제사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했고, 홍익대는 강의를 맡길만한 책임자가 없어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했다.

3) 개설 학년

이는 각 대학이 대체적으로 법제사 강좌 수강대상을 몇 학년으로 잡고 있는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학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설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강좌별로 구분해 준 곳이 있고, 몇 학교는 인터넷으로 교과과정을 확인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학년	단국대, 순천대, 인제대, 인천대, 제주대, 청주대(6)
2학년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광주대, 국립한경대, 대전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상지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명대, 한국외국어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북대, 조선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한양대, 한국해양대, 호남대(27)
3학년	대구가톨릭대, 서경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위덕대(5)
4학년	경기대, 군산대, 대전대, 동신대, 배재대, 부경대, 수원대, 숭실대, 영남대, 전주대, 홍익대(11)
기타	경성대(?), 국민대(3·4), 동국대(2/3), 동국대(경주)(2/3·4), 동아대(3·4), 목포대(2/4), 서울대(2/4), 숙명여대(다군:3·4), 신라대(2/3), 인하대(3·4), 전남대(1/4), 한동대(3·4), (12)

이를 보면 2학년을 대상으로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이 거의 반이다. 이는 요즘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년 때 법학개론과 헌법·민법총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어려운 법학분야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기초적인 법지식으로써 법제사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한 학년을 수강대상으로 하지만, 국민대나 동아대·인하대·한동대처럼 한 가지 강좌를 개설하면서도 두 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특히 숙명여대는 강좌를 난이도에 따라 群으로 분류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는 학년을 지정하는데, 법제사는 3·4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다군”으로 분류했다.

법제사 강좌를 여러 가지 개설하는 경우 동국대는 서양법제사와 로마법은 2학년, 한국법제사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목포대는 서양법제사와 로마법은 2학년, 한국법제사는 4학년을 대상으로, 신라대는 한국법제사는 2학년, 서양법제사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서울대는 로마법과 서양법제사는 2학년, 한국법제사와

한국근대법사·중국법제사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경성대는 몇 학년이 대상인지 답이 없다.

4) 필수·선택 구분

일단 모든 대학이 법제사 강좌는 전공과목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인 58개교가 전공선택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3개 대학 가운데 단국대(서울)는 2002학년도부터 1학년 전공필수로 하고, 인제대는 1학년에 개설해서 사실상 전공필수나 다름없이 모든 학생이 듣는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대는 학부과정에서 서양법제사·로마법·법사상사·한국법제사 가운데 1강좌 이상은 필수선택이므로 1강좌 정도는 거의 필수라 할만하다.

5) 담당 교수

현재 법제사 강의를 담당하는 분이 전임교수인지 시간강사인지, 그리고 그분의 전공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법제사를 전공한 교수가 많지 않다는 것과 법제사전공 교수를 전임으로 두고 있는 대학이 몇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각 대학 법제사 강좌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질문이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으나 법제사를 전공하지 않은 분이 하는 강의라면 일단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법제사 전임교수가 없는 대학이라면 교과를 개편할 때 법제사 과목이 우선적으로 축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법제사 강좌를 전임교수(명예교수 포함)가 담당하는 대학은 35곳,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대학은 29곳이다(무답 1). 동국대·목포대·한국외국어대처럼 법제사 강좌가 두 가지 이상이라 전임교수와 시간강사가 분담하는 곳도 있고, 창원대는 비록 1강좌지만 전임교수와 시간강사가 분담하고 있다.

강좌 담당교수들을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제사 11, 법철학 5, 법사상사 3, 기초법 1, 법사회학 2, 교회법 1, 민법 26, 상법 2, 형사법 2, 국제법 2, 노동법 1, 무답 11명이다. 여기서 법제사전공은 세부적으로 한국법제사·동양법제사·서양법제사·로마법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굳이 분류하지 않았으며, 또 법제사전공이 11명으로 나타나지만 한 사람이 몇 개 대학의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법

제사전공자가 11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전공을 대체적으로 분류하면 법제사를 포함한 기초법전공이 23명, 민사법 전공이 28명, 기타 5명이다. 세부전공으로는 민법전공이 26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우리 현행민법이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전공과 서양법제사가 밀접하기 때문일 것이다.

6) 대학원의 법제사 강좌

대학원 과정에서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강좌명을 적어달라고 했다. 이는 본디 이번 조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대학원 과정의 법제사 강좌 현황도 대충이나마 엿보기 위해서 설문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대학원 과정의 강좌는 학부와 달리 1년을 단위로 같은 강좌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사실상이 설문에는 답하기가 모호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답한 몇 대학은 실제로 개설되는 강좌라기보다는 교과과정에 실려있는 것을 그냥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물론 법제사를 전공한 교수나 비록 법제사가 전공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관심이 많은 교수가 전임으로 있어서 대학원 과정에도 꾸준히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고 법제사전공 제자를 기르는 대학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인 것 같다.

이 설문에 답한 대학은 모두 17곳이나, 대부분 한두 강좌를 개설하거나 제목으로 봐서는 학부에서 개설하는 강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를 전공한 교수가 전임으로 있는 대학이 몇 안 되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 비춰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결국 이 설문의 의도는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대학

설문지에 답한 대학 가운데 현재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대학은 32곳으로 약 3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연세대(원주)는 한국법제사와 서양법제사 강좌를 해마다 개설하다가 다른 학교보다 먼저 학부제와 복수전공제를 도입함에 따라 비교

적 빠른 1998년부터 완전히 밀어냈고, 경찰대는 2000년 교과개편으로 서양법제사를 폐지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은 2002학년도부터 법제사를 법사상사에 흡수시킨다고 했다. 한편 중앙대는 2002학년도에 법제사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라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했다. 그리고 관동대는 교과과정개편으로 대상학년이 이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서는 사실상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속하지만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했다.

이전에 지금까지 법제사 강좌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제사 강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종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서 체감하는 것은 근년의 대학개편으로 법제사의 위치가 더욱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대학에 세 가지를 질문했다. 즉 교과과정에 법제사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법제사 강좌를 개설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1) 교과과정에 법제사 과목이 있는지 여부

현재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는 않지만 교과과정에는 있다는 대학이 13곳, 아예 교과과정에도 없다는 대학이 19곳이다. 이 숫자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예 교과과정에도 없는 대학이 더 많은 것은 유감이다. 교과과정을 한번 개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몇 년 안에는 다시 개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록 현재 개설하지는 않더라도 교과과정에 법제사 과목이 있으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좀더 쉽게 강좌를 개설할 수 있지 않겠는가?

2)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를 예시했으나 답을 한 가지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 안은 답한 숫자.

- ① 학부제 실시 등 대학교육개편으로 강좌수를 제한하기 때문에(22)
- ② 강의를 담당할 책임자가 없어서(4)
- ③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6)
- ④ 기타 : 2

이 설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교수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교수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선책으로 교과과정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만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법제사 강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면 부득이 이 조사에 협조하는 분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설문에 대한 답은 협조자의 주관이 개입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협조자가 그 대학에서 몇 년 근무한 분이라면 그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답이 크게 잘못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예상대로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대부분이 ①을 들었다. 이는 학부제 또는 복수전공제를 운영하면서 전공이수학점을 크게 줄이는 한편 교양 과목을 많이 늘이면서 전공과목의 개설을 줄이는 탓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이유라면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수는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강좌를 보면 종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이 많이 눈에 띈다.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이나 세법 등 좀더 전문적인 강좌들이 새로 많이 개설된다. 그렇다면 법학과에서 개설되는 강좌의 총수는 줄지 않고, 단지 새로운 강좌가 전통적인 강좌를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조사에는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총수와 근래에 새로 개설하는 강좌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만약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강좌를 새로운 강좌가 대신한 꼴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과정에서 전통적이며 기초적인 과목에 충실하는 것과 전문적이고 지엽적인 과목을 추구하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깊이 고려할 문제다.

한편 이주대·연세대·중앙대·한림대는 ②를 이유로 들었는데, 특히 연세대는 법제사전공 전임교수가 없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대불대·방통대·우석대·울산대·천안대·호원대 등은 ③에 해당하는 이유로, 구체적으로는 공업지역의

특성이나 학부제의 특수성, 특정과목의 특성화, 산업대학체제의 특성 등을 들었다. 그리고 기타에 속하는 이유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동대가 교과과정개편을 들었고, 연세대는 수강생이 적어서 개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었다. 즉 기초법 강좌를 동시에 여러 개 개설하면 수강생 미달로 모두 폐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대와 항공대는 이유를 답하지 않았다.

3) 앞으로 법제사 강좌를 개설할 가능성

현재는 비록 법제사 강좌가 없지만 앞으로는 개설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 설문은 우선 “앞으로”가 언제까지를 말하는지 모호하지만, 몇 십 년 후를 묻는 것은 분명 아니다. 대체로 2-3년을 염두에 둔 것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협조자의 건전한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이 설문에 대한 답은 각 대학의 공식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협조자의 판단에만 의존했다. 이 문제는 앞의 문제에 비해 각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적으므로 결국 이 설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상당히 주관적이고 따라서 그 신빙성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이 법제사 강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있다	가톨릭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동의대, 명지대, 서원대, 아주대, 안동대, 중앙대, 한림대(11)
없다	강남대, 경남대, 경주대, 공주대, 단국(천안), 방통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천안대(10)
무답	강릉대, 건대(충주), 경찰대, 대구대, 대불대, 목원대, 서강대, 우석대, 항공대, 호서대, 호원대(11)

또 개설 가능성과 교과과정에 법제사 과목이 있는 때와 없는 때를 연계시켜 정리했다.

교과과정	가능성	대 학
있다	있다	가톨릭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아주대, 중앙대, 한림대(7)
	없다	연세대, 연세대(원주)(2)
	무답	대구대, 대불대, 목원대, 서강대(4)
없다	있다	동의대, 명지대, 서원대, 인동대(4)
	없다	강남대, 경남대, 경주대, 공주대, 단국(천안), 방통대, 울산대, 천안대(8)
	무답	강릉대, 건대(충주), 경찰대, 우석대, 항공대, 호서대, 호원대(7)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현재는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교과과정에 법제사 과목이 있는 대학의 협조자들은 앞으로 강좌가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더 많고, 반대로 교과과정에 법제사 과목이 없는 대학의 협조자들은 앞으로도 강좌가 개설될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설문에 대한 답이 비록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조교가 질문에 답한 대학이 10곳 있다고 했으나, 여기 장래의 법제사 강좌 개설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는 조교가 답한 것이 하나도 없다.

3. 다른 기초법 강좌

법제사 강좌 외에 개설한 기초법 강좌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다. 이는 이 조사의 본디 취지에는 벗어나는 것이나 이를 통해서 법제사 강좌의 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넣었다. 법제사 강좌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모든 과목을 종합·분석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차선책으로 이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기초법”인지 그 개념마저도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

가 기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법철학·법(률)사상사·법사회학을 기본적으로 예시하고 기타난을 마련해서 각 대학에서 기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강좌를 쓸 수 있게 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철학 : 93, 법(률)사상사 : 40, 법사회학 : 33, 영미법 : 7, 법학방법론 : 2
비교법 : 3, 법윤리·한국법의 이해·기독교법사상·법과 사회

놀랍게도 법철학은 설문에 답한 모든 대학이 개설한다고 했다. 그리고 법사상사나 법사회학을 개설하는 대학도 의외로 많았다. 법제사를 이들과 비교한다면 법철학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법사회학보다는 거의 두 배가 많다.

IV.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법사학회 관계자들이 우려한 것에 비해서는 전국 각 대학에서 법제사 강좌가 상당히 널리 개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법철학을 비롯한 다른 기초법 과목도 많이 개설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법학이 고시위주로 흐른다고 우려했던 점에 비춰볼 때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갈수록 더해 가는 고시열풍 가운데서도 기초법이 이나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법학자들이 여전히 우리 법학의 건전한 발전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도의 숨을 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숫자일 뿐 그 질까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과연 우리나라 법제사 교육이 이 숫자에 버금갈 정도로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렵도 없다. 단적인 예로 현재 법제사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61개 대학에서 법제사전공 교수가 강의를 하는 곳은 겨우 11개 대학이다. 법철학을 비롯한 다른 기초법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른바 6법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법제사는 아직 변변한 교재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고무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학은 당분간 고시위주로 흐를 것이 뻔하다. 그리고 대학의 교육개편에 따른 기초법에 대한 압박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른다. 즉 이 숫자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피부로 느끼던 위기감의 실체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외부에서 오는 이러한 압박을 쉽게 없앨 수는 없다. 그보다는 먼저 내실을 도모하는 것이 첩경이리라.

그러자면 이 조사의 후속조치로 법제사 강좌를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현재 각 대학에서 법제사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강좌의 내용이나 사용하는 교재, 문제집, 요망사항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법사학회 정례학술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평소에 자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교재편찬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